



2015 제3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제29권 제3호)

수사이의신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단계에서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Objection for the Investigation

- Civil Participation in Police Stage -

명도현*·박호현**

차 례

- | | |
|-----------------------------|----------------------------------|
| I. 서론 | IV. 시민사법 실천을 위한
수사이의신청제도 개선방안 |
| II. 형사절차의 시민참여와
수사이의신청제도 | V. 결론 |
| III. 수사이의신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

국문 요약

범죄진압 및 수사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들은 그 절차와 결과에 있어 공정해야 하고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또한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 그리고 사회질서 유지를 목표로 하는 바, 이러한 절차 및 과정들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사경찰관들의 범죄수사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수사이의신청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단계에서 수사이의신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또한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행 수사이의신청제도는 이의사건에 대한 낮은 수용율과 인용율, 제도의 실효성 확보, 심의의 효과성과 공정성 확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의 문제와 수사이의

신청제도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형사절차의 시민참여와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사이의 신청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이의조사팀과 청문감사관실의 업무분장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경찰의 수사활동 독립성 보장과 수사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담당수사관의 제척·기피·회피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이의를 신청한 자의 이의사유를 청구하고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수사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주저자.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교신저자.

I. 서론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절차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법률규정을 통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절차에서 경찰을 지휘·감독해왔다. 그러나 2011년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의 개정을 통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게 되었고, 같은 해 검찰청법 제53조의 삭제로 기존 경찰의 검찰에 대한 상명하복관계가 법률규정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 중 전체의 약 98%이상의 수사는 일차적으로 사법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수사의 능률향상과 책임수사 및 공정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¹⁾ 그러나 형사사건의 수사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시민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따라서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과 형사사법기관의 견제 및 통제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특히 가장 인접거리에서 시민과 접촉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단계에서의 수사이의신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제도 또한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사

1) 이정덕·임유석, “범죄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사이의신청제도 개선방안”, 경찰법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2012, 154쪽.

절차의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수사이의신청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형사절차의 시민참여와 수사이의신청제도

1. 시민사회의 필요성

시민사회는 고대로부터 중세 그리고 근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의미변화와 그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필요성은 3가지로 요약·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민의 자유권 보장 둘째, 시민결사체의 보장 셋째, 시민참여권의 보장이다.

1) 시민의 자유권 보장

자유주의이념은 시민들 각자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가장 강조한 이념이다. 자유주의 이념을 통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시민들 각자의 재산권, 사상, 신앙, 언론 등의 기본권 보장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정부가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때에 정부의 권위 내지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시민들이 가진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거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시민들 각자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면 시민사회는 그 존립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국가가 모든 권력과 권한을 주도하고 요구하는 곳에서는 시민들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시민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²⁾

2) 시민결사의 보장

시민결사 내지 시민연대 또한 시민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개념이라 할 수 있다.³⁾ 국가나 정치권력이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억압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시민들의 결사 내지 연대를 통해 저항한다면 그러한 권력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시민적 결사체들은 국가와 개인 간에 놓인 매개적 영역이다. 이러한 매개 영역이 두터울수록 그 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적 통합은 그만큼 견고해진다.⁴⁾

3) 시민참여권의 보장

시민참여는 단순히 각자의 시민이 자신과 가족, 친족 등의 작은 공동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의 주권자로서 국가공익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공론장이다. 또한 단순히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치공동체

2) 호세 욘파르트 / 정중휴 역,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9, 86-87쪽.

3) 독일의 사회학자 출은 연대를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결합 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규정은 '동등한', '사회적', '결합'이다. 첫째, 연대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치·권리·권력의 평등을 인정하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연대는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관계와 구분되며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의 공생 관계와도 다르다. 둘째, 연대는 사회적 성격을 갖는다. 즉 개인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유하는 가치와 목표와 규범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연대는 단지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모인 집단 이익의 추구와 구분된다. 셋째, 연대는 사람들 사이의 연합이다. 즉 공동체 의식, 동료 의식, 또는 형제자매애를 갖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 행동하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단지 욕망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담합이나 일시적으로 집단 감정에 사로잡힌 군중행동을 연대라고 부르지 않는다(자세한 내용은 신진욱의 시민 참조).

4) 장규원·박호현, "형사사법에서 시민참여에 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4, 240-246쪽.

의 실질적인 발전과 공공부문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⁵⁾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와 통치형태의 근본을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이념적 전통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공화국이란 법과 공공선에 기반을 두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만들어낸 정치공동체를 의미한다. 공화주의가 포함하는 핵심은 ‘자유’와 ‘참여’이다. 따라서 각자의 시민들은 다양한 시민들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타인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 시민결사체 내지 연대를 통해 공동체의 공공선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근대 정치사상의 핵심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⁶⁾

2. 수사절차에서의 시민참여

1) 수사절차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수사절차에서의 시민참여는 ‘수사절차의 공정성·확보’를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절차는 개방적이지 못하고 폐쇄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수사가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되다보니 ‘편파수사’나 ‘과잉수사’ 결국 ‘불공정 수사’의 의혹까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사건진행의 과정이나 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그 절차가 외부에 개방될 경우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와 처리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⁷⁾

5) 장규원·박호현, 앞의 글, 2014, 243-244쪽.

6) 에이프릴 카터 / 조호제 역, 직접행동, 교양인, 2010, 171-174쪽.

7)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는 검찰시민위원회, 형사조정제도,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시민참여와 맥락을 같이 한다(김재봉, “수사절차와 시민참여-경찰 수사절차를 중

수사기관은 수사절차에서 다양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시민참여는 재량권행사의 통제로 처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로 수사절차의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결국 현대 수사절차에서 시민참여는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확보의 수단과 부족한 지식과 능력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전문가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의 학습효과

수사절차에서의 시민참여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시민들의 의사적용 왜곡이나 대표성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형사사법절차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도입도 이러한 형태에서 이해할 수 있고, 기소절차나 수사절차에서의 시민참여도 직접 민주주의를 통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이 된다.⁸⁾ 또한, 시민들은 수사·기소·재판 등의 각 절차에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민주주의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된다. 형사사법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동기가 필수적이라

심으로”, 경찰법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2012, 167쪽).

8) 기소에 대한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기소권은 본래 시민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의식과 결부되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권한을 기소배심에 맡기고 있다(김태명, “검찰시민위원회 및 기소심사회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참고하여.”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53-154쪽; 이성기, “검사의 부당한 공소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 기소대배심제의 수정적 도입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3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468-470쪽; 이재협, “미국 배심제에 대한 법인류학적 고찰-과학주의의 관점에서 본 미국 배심제의 논리”,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348-355쪽).

는 점에서 시민참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⁹⁾

3)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방법으로서의 시민참여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은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법집행을 위해 물리적 힘을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보다 더욱 권위적이고 폐쇄적이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국회에 의해 조직 및 예산에 관한 통제 이외에는 어떠한 통제도 받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통제 역시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국가공공정책에 대한 결정에 시민참여의 본질적인 제도적 의의는 시민이 직접 행정결정과정과 절차에 참여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 있으며, 수사기관에 대한 시민참여는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권력분립을 위한 중요한 장치가 된다.¹¹⁾

4) 변화된 현상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의 시민참여

-
- 9)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민 참여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 국민의 자기통치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재판이 시민에 대한 학습효과를 갖는다(이금옥,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138쪽).
 - 10) 최응렬,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공안행정학회보 제1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2, 313쪽.
 - 11)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 보장은 한곳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한 권력남용위험의 방지,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확보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된 것이다(서보학,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장 방안연구,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2004, 25쪽).

시민참여가 국가기관의 권력통제라는 전통적인 가치 외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의 등장은 공공정책의 결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이론적·실제적 근거가 된다.¹²⁾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신공공관리론’의 등장을 통해 행정과정에 대한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명령과 통제로 인한 행정이 아니라 참여와 협력에 의한 행정, 하향식 의사결정방식에서 상향식 의사결정방식, 행정편의에서 시민위주의 고객만족에 대한 관점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의 방식으로는 통제절차를 기준으로 직접통제와 간접통제, 통제의 시점을 중심으로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통제의 주체를 기준으로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내용과 절차가 단순했던 시기에는 주로 내부통제를 통해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수사기관의 전문성 및 기술성의 향상으로 내부통제의 한계성이 지적되면서 중립성향의 시민으로 구성되거나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수사기관의 외부에서 수사기관의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경향으로 확대되고 있다.¹³⁾

3. 수사이의신청제도의 의의 및 절차

1) 수사이의신청제도의 의의

수사이의신청제도는 고소사건이나 일반형사사건에 있어 사건 담당수

12) 김유환, “국민참여에 의한 행정분쟁해결제도”, 저스티스 제81호, 한국법학원, 2004, 41쪽.

13) 최응렬, 앞의 글, 2002, 312쪽.

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의 편파수사 및 수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불만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범죄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을 위해 범죄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사건에 대해 수사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가려 재수사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의미하기도 한다.¹⁴⁾ 사건 관계인이 수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물론이고 검찰로 송치되어 최종 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검찰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수사이의신청제도'의 대상사건은 교통사고와 검찰에서 이첩된 사건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검증을 할 수 있다.¹⁵⁾

14) 이정덕·임유석, 앞의 논문, 156쪽.

15)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에 있어 경찰의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가해자, 피해자가 다투어 있는 사건 또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편파수사라면 민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평소 교통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참석시켜 해당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만든 자문회의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375호)에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3인에서 5인 이내의 민간인 위원(교통관련 학자, 변호사, 손해사정인 등 교통관련 법률전문가, 교통사고 분석전문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과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위원회는 경찰공무원 1인을 별도의 간사로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건은 지방경찰청에서 이의조사 한 사건 중에서 검찰로 송치하기 이전 단계로 교통사고 발생원인 분석 등 수사상 감정이 필요한 사건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감정서류에는 현장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당사자 최초 진술서 등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자료 등이 있다(자세한 내용은 강순

2) 수사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1) 수사이의신청 처리기준

범죄사건의 피의자(피고소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피해자(고소인, 진정인)와 참고인의 신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접수된 수사이의신청대상의 본래사건이 내사종결 되었거나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처리된다.¹⁶⁾ 첫째, 해당 경찰관서 수사관의 편파수사가 의심될 때에는 지방경찰청의 수사이의조사팀은 본래사건을 인계받아서 병합수사 할 수 있다. 둘째, 이의내용이 해당 수사관 또는 수사팀의 교체요구이거나 수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이의조사팀이 직접 재수사하거나 수사관 교체, 재수사 등을 본래사건 수사담당 경찰관서에 지시할 수 있다. 셋째, 이의내용이 수사지연인 경우에는 수사이의조사팀이 본래사건 수사팀장 등으로부터 경위서를 청구하는 등 직접 조사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신속히 수사 후 결과보고 하도록 본래 사건 수사관서에 지시할 수 있다.

또한 수사이의신청대상이 된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로 송치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처리된다. 첫째,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의견과 다른 처분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이의조사팀이 담당검사와 협의하여 직접 보강수사 후 추송하거나 본래사건 수사관서에 보강수사 후 추송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관계의 변경이 없는 경우

천, “재판 전 형사절차에 있어서 시민의 사법참여제도-공소권통제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참조).

16) 자세한 내용은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경찰청예규 제486호)’ 별표2 수사이의사건 처리기준 참조.

에는 검찰단계의 이의제기·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 다른 불복 절차를 안내하고 수사이의조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2) 수사이의신청 처리절차

경찰청예규 제503호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은 수사이의조사팀 구성에 있어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수사이의조사팀의 경우 수사이의조사팀장 1인과 3인 이상의 팀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청·서울청·부산청은 팀장 1인과 5~7인 이상의 팀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사이의조사팀장과 팀원은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수사능력이 검증된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신청한 수사이의사건의 부당한 접수거부, 수사절차 미준수, 사건처리에 있어 고의적인 지연, 수사결과에 대한 불만족, 인권침해 등의 수사이의신청대상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이의사건의 대상이 된 수사관 및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의 판단 역시 수사이의조사팀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이의사건은 수사이의조사팀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의조사팀 이외의 경찰관서에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수사이의사건은 접수 전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고 부당한 수사이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침해 등 청문감사담당관의 소관 사항이 포함된 이의사건은 수사이의조사팀장과 청문감사담당관이 협의하여 접수·처리부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이의조사팀이 처리부서가 된 경우에는 청문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한다.

이의조사팀장은 이의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이의사건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수사이의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이유 없어 내사종결하거나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

할 경우 무고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는 이의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의 적절성 여부와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 여부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의조사팀장은 수사과오가 인정될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수사과오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해당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사과오에 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청문감사담당관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사과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수사관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Ⅲ. 수사이의신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수사이의신청제도 운영현황

1) 최근 4년간 수사이의 및 수사관 교체신청 현황

2012년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전국 경찰청이 접수한 수사이의 신청건수는 4,608건이었으며, 수사관 교체 신청건수는 6,168건으로 집계 되었다. 최근 4년간 수사이의 및 수사관 교체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수사이의 및 수사관 교체신청 현황(2012년~2015년 6월)

구분	수사이의사건		수사관 교체신청		이의 비율(%)	수용 비율(%)	접수 비율(%)	수용 비율(%)
	접수	수용	접수	수용				
계	4,608	166	6,168	4,855	100	3.6	100	78.7
서울청	994	35	1,703	1,243	21.6	3.5	27.6	73.0
부산청	462	5	662	577	10.0	1.1	10.7	87.2
대구청	355	11	292	233	7.7	3.1	4.7	79.8
인천청	186	24	335	291	4.0	12.9	5.4	86.9
광주청	115	3	243	205	2.5	2.6	3.9	84.4
대전청	234	8	210	184	5.1	3.4	3.4	87.6
울산청	80	1	77	63	1.7	1.3	1.2	81.8
경기청	689	53	1,284	992	15.0	7.7	20.8	77.3
강원청	113	4	174	107	2.5	3.5	2.8	61.5
충북청	153	1	134	103	3.3	0.7	2.2	76.9
충남청	233	7	131	110	5.1	3.0	2.1	84.0
전북청	116	1	150	120	2.5	0.9	2.4	80.0
전남청	354	0	183	146	7.7	0.0	3.0	79.8
경북청	262	2	179	150	5.7	0.8	2.9	83.8
경남청	181	1	262	211	3.9	0.6	4.2	80.5
제주청	81	10	149	120	1.8	12.3	2.4	80.5

*자료: 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국회의원(2015. 10. 05)

전국 16개 지방청에서 총 4,608건의 수사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수용처리된 사건은 166건으로 신청대비 수용율은 3.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지방청 수용비율은 인천지방경찰청이 186건의 접수 대비 24건의 수용으로 수용비율 1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지방경찰청이 354건의 접수 대비 0건의 수용으로 수용비율 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국 지방경찰청의 수사이의사건에 대한

수용율이 3.6%에 그쳐 수사민원에 대해 인용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수사관 교체 신청은 6,168건의 신청대비 4,855건으로 78.7%의 수용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 연도별 수사이의 및 수사관 교체신청 현황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수사이의신청과 수사관 교체요청에 대한 신청건수는 2011년 각각 1,246건에서 1,355건으로, 1,026건에서 1,96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이의 신청과 수사관 교체요청에 대한 연도별 신청현황과 수용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수사이의제도 신청 및 수용현황(전국)

연도	수사이의제도		수사관 교체요청제도	
	신청	수용	신청	수용
2011년	1,246	48	1,026	789
2012년	1,231	48	1,678	1,434
2013년	1,335	49	1,567	1,225
2014년	1,340	60	1,963	1,481

*자료: 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국회의원(2015. 09. 21)

3) 전국 지방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최근 3년, 2015년 7월 기준)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청의 수사이의 심의건수는 총 2,36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의인정건수는 128건으로 인용율 5.4%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최근 3년간 전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심의건수	이의인정건수	인용율
계	2,365	128	5.4%
서울청	648	36	5.6%
부산청	307	0	0.0%
대구청	118	9	7.6%
인천청	108	19	17.6%
광주청	91	3	3.3%
대전청	115	9	7.8%
울산청	34	0	0.0%
경기청	374	33	8.8%
강원청	40	3	7.5%
충북청	54	1	1.9%
충남청	82	5	6.1%
전북청	35	1	2.9%
전남청	210	1	0.5%
경북청	61	0	0.0%
경남청	59	0	0.0%
제주청	29	8	27.6%

*자료: 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2015. 10. 05)

전국 16개 지방청 중 인용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총 29건의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열려 8건이 인정되어 인용율 27.6%로 나타났다. 인용율이 가장 낮은 지방청은 부산청, 울산청, 경북청, 경남청으로 나타났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가 각각 부산청 307건, 울산청 34건, 경북청 61건, 경남청 59건이 열렸으며, 이 중 이의인정건수는 각 지방청별 0건, 인용율 0%로 집계되었다.

4) 연도별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2,365건 중 128건만이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가 인정됐을 뿐 나머지는 전부 ‘이의 없음’으로 결론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심의를 진행한 사건은 67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2014년에 1,132건, 2015년은 상반기까지 563건으로 집계되었다. 2015년 상반기 심의건수가 563건임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심의건수는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사이의 심의건수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결과를 통한 이의인정에 대한 인용율이 2013년 7.3%에서 2014년 5.1% 2015년 3.7%로 나타나 이의신청횟수와 심의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반해 인용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는 연도별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개최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4>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개최결과(2015년 7월 기준)

구분	심의건수	이의인정건수	인용율
2013년	670	49	7.3%
2014년	1,132	58	5.1%
2015. 7월	563	21	3.7%
합계	2,365	128	5.4%

*자료: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2015. 09. 17)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인용율이 5.4%에 불과하고 수사이의 신청건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용율이 갈수록 낮아짐으로 인해 수사이의제도가 갖는 본래의 목적달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5) 수사이의 제기 이유 및 수사관 교체제기 이유

경기지방경찰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을 기준으로 수사이의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편파수사 혹은 수사처리에 대한 불만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송치 후 재수사 등의 기타의견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편파수사 혹은 부실수사로 인한 원인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지방경찰청을 기준으로 한 최근 3년간의 수사관 교체제기 이유로는 기타의견을 제외한 단일명목으로 편파수사, 인권침해, 친분관계, 청탁의혹, 욕설·금품수수 의혹 순으로 조사되었다.¹⁷⁾

6)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이의인정 결과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이의인정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청, 경기청, 대구청을 기준으로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조치현황을 살펴보았다.¹⁸⁾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이의인정 결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조치현황(서울청·경기청·대구청)

	구 분	이의인정건수	조 치 사 항		징계현황
			주 의	청 문 통 보	
서울청	2013년	10	10	0	0
	2014년	10	10	0	0
	2015. 7월	8	7	1	0
경기청	2013년	19	11	8	1

1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부산경찰청) 참조.

18)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조치현황에 대한 자료조사의 한계로 인해 데이터가 공개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그리고 대구지방경찰청을 기준으로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이의인정결과를 살펴보았다.

	구 분	이의인정건수	조 치 사 항		징계현황
			주 의	청 문 통 보	
	2014년	11	7	4	0
	2015. 8월	3	0	3	0
대구청	2013년	1	1	0	0
	2014년	5	2	3	0
	2015. 7월	4	3	1	0
계		71	51	20	1

*자료: 각 지방청 제출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인정결과를 살펴보면 이의 인정된 사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대부분 주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 경기청, 대구청을 기준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세 곳의 지방청에서 수사이의 심사를 통한 이의인정건수는 총 71건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주의에 그친 경우가 51건, 청문통보 된 경우가 20건으로 나타났으며, 징계에 처해진 경우는 1건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2013년도 조치사항으로 이후에는 이의인정에 대한 조치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현행 수사이의신청제도의 문제점

수사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는 본래의 취지는 수사과정에서 또는 수사결과를 통해 당사자가 만족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여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진행과정과 수사결과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제도의 본래적 취지를 살려 운영한다면 시민참여에 의한 경찰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사이의신청제도를 들여다보면 그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여러 가

지 문제점이 확인된다.

1) 이의사건에 대한 낮은 수용율과 인용율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수용처리 되는 경우는 3.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사 중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사이의신청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적인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매우 낮은 인용율은 불법과 부당을 배제하고 공정한 범죄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수사이의 신청은 계속해서 증가한 반면에 인용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수사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2) 수사이의제도의 실효성 확보의 문제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 3년간 편파수사, 부실수사로 인한 문제제기에 대해 2.7%만이 수사진행 중에 시정조치 되었고, 나머지 97.3%는 이미 수사가 끝난 다음에 심의가 이루어져 현재의 수사이의제도는 그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가 제기된 수사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강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하기 위해서는 검찰송치 전에 이의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사이의신청은 검찰송치 이후 접수된다. 이는 수사관이 당사자에게 사건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 당사자가 사건의 1차 결론을 알게 되는 시점이 송치단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한 여부를 그 이후에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¹⁹⁾ 송

치 이후 이의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보강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편파수나사 부실수사를 비롯해 수사결과로 인한 이의신청에 있어서도 검찰송치 전에 이의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3) 심사위원회 심의의 효과성 확보의 문제

수사이의신청제도에 있어 낮은 수용율과 인용율의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수사이의가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주의 조치로 끝나 경찰관의 잘못에 대한 징계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청문통보를 한 사안에 대해서도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4) 심사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의 문제

수사에 이의가 있어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 인용되는 인용율이 매우 낮은 것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각 지방청별로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두고 수사이의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위원회는 6명의 내부위원과 9~14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매 회의마다 4명의 내부위원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외부위원 3명 이상)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경찰 내부위원의 수와 외부위원의 수 차이가 크지 않고 의결 조건 역시 출석위원의 과반수에 불과해 심사가 얼마나 객관성과 공정성

19) 서지원, 경찰 허울뿐인 수사이의제도, 금강일보, 2013, 10, 7.

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외부위원의 의견에 대한 경찰의 수용여부와 외부위원이라 하더라도 전직 경찰 등 경찰과 밀접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²⁰⁾

5)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의 문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수사이의신청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이의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이 대부분 경찰과 관련된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방청 심사위원회 외부 심사위원 13명 중 절반이 경찰관련 학과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며, 관할서의 민원상담관이 외부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퇴직경찰들의 모임인 경우회소속인 외부위원과 같이 친 경찰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경찰조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외부위원들 중 자동차매매사업 조합원이나 농업종사자, 무직자 등 수사와 너무 동떨어진 인사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전문성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6) 수사이의신청제도 운영상의 문제

첫째, 수사이의신청제도의 대상사건은 교통사고와 검찰에서 이첩된 사건은 제외되어있지만, 이 외의 영역은 상당부분이 청문감사관과의 업무

20) 자세한 내용은 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2015. 10. 05),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 참조.

처리 및 범위가 중복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행정경찰로부터의 수사경찰의 수사 활동 독립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 수사경찰의 내부만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시민들 전체가 만족하는 수사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사경찰업무의 독립성 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경찰조직은 계급에 의한 위계질서로 운영되는 준 군대식의 조직이므로 경찰의 특수한 조직문화와 위계질서 때문에 모든 범죄수사에 있어서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위·감독에 대해 사건담당수사관의 이의제기를 표면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내재적인 문제점이 있다. 넷째, 경찰수사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법관과 같은 제척·기피·회피와 같은 구체적인 구분과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처리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자의 이의사유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진술기회조차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²¹⁾

IV. 시민사법 실천을 위한 수사이의제도 개선방안

‘수사이의신청제도’는 본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과 결과에 만족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차적인 재조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해야 범죄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얻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에 대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21) 이정택·임유석, 앞의 글, 2012, 166쪽.

첫째, 수사이의신청제도는 제도가 갖는 본질적인 실효성 확보하여야 한다. 이의사건에 대한 낮은 수용율과 인용율, 심의결과에 따른 효과성 확보와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사이의신청제도의 경우 수사이의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사이의신청제도는 내부통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사이의 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수사이의 신청제도의 성패는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보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검찰에서 운영 중인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개최를 검찰 스스로 결정하고,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이 없으며 시민위원의 자료 접근권에 제한이 있다는 점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사이의신청제도 또한 독립된 지위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²²⁾

둘째, 조직 내 업무분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수사이의조사팀’의 업무범위는 수사이의신청의 부당한 접수거부, 부적법한 수사절차, 사건처리 지연, 수사결과 불만족, 인권침해에 대한 사항과 대상이 된 본래사건 수사관 및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교통사고와 검찰에서 이첩된 사건은 제외되어

22) 김재봉, 앞의 글, 2012, 179쪽.

있다. 청문감사관과 수사이의조사팀의 업무는 중국적으로 고려해 보면, 수사과정과 처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동일한 이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서로 달리 운영되어오고 있다. 동일한 목적을 위해 같은 조직 내에서 굳이 담당부서를 구별해 운영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담당 업무 또한 업무의 중복을 지양하는 등 상당부분 조정되어야만 한다.

셋째, 행정경찰로부터 수사경찰의 수사활동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일선 경찰서에 수사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수사공보관을 배치하여 대 언론 관계는 수사공보관이 전담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수사 도중에는 수사지휘·감독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고 수사이의조사 대상사건이 되었을 경우에도 사건에 대해서 사건담당 수사관의 일차적인 고견을 수렴해야 한다.

넷째, 수사경찰에게도 법관의 경우와 같이 직무집행에 있어 제척·기피·회피사유를 구체화하여 자의적인 판단기준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해야 하며, 수사이의신청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신뢰확보와 범죄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수사이의를 신청한 자의 이의사유를 청취하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사이의신청의 주된 이유가 편파수사 내지 부실수사라는 점에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수사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종래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내려온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수사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Ⅵ. 결 론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절차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라는 법률규정을 통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절차에서 경찰을 지휘·감독해왔다. 그러나 2011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의 개정을 통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게 되었고, 같은 해 검찰청법 제53조의 삭제로 기존의 경찰의 검찰에 대한 상명하복관계가 법률규정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법률규정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건수사에 있어 초동수사가 경찰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그동안 정치권력의 시너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치권의 하부조직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이를 통해 국민과 시민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따라서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확보와 형사사법기관의 견제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가장 인접거리에서 시민과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경찰단계에서의 수사이의신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제도 또한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이의신청제도의 본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시민참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청문감사관과 수사이의조사팀의 업무의 유사성에서 오는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업무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수사경찰의 수사활동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사경찰에게 시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수사이의신청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의 수사방식에 대한 개선과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 주제어(Key Words) : 범죄수사(Criminal Investigation), 청문감사(Hearing Inspection), 편파수사(Polarization Investigations), 수사활동 독립성 (Independent Investigation Activities), 인권침해(Violations of Human Rights).

〈논문 접수 : 2015. 10. 30, 심사 개시 : 2015. 11. 17, 게재 확정 : 2015. 12. 23〉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김석준, 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서보학,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장 방안연구,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2004.

신진욱, 시민, 책세상, 2008.

에이프릴 카터 / 조효제 역, 직접행동, 교양인, 2010.

호세 움파르트 / 정종휴 역,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9.

2. 논문

강순천, “재판 전 형사절차에 있어서 시민의 사법참여제도-공소권통제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김유환, “국민참여에 의한 행정분쟁해결제도”, 저스티스 제81호, 한국법학원, 2004.

김재봉, “수사절차와 시민참여-경찰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2012.

김태명, “검찰시민위원회 및 기소심사회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참고하여”,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이금옥,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이성기, “검사의 부당한 공소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 기소대배심제의 수정적 도입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3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이재협, “미국 배심제에 대한 법인류학적 고찰-과학주의의 관점에서 본 미국 배심제의 논리”,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이정덕·임유석, “범죄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사이의신청제도 개선방안”, 경찰법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2012.

장규원·박호현, “형사사법에서 시민참여에 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4.

최응렬,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公安행정학회보 제1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2.

3. 기타

서지원, 경찰 허울뿐인 수사이의제도, 금강일보, 2013, 10, 07.

2015년도 국가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ABSTRACT >

Improvement of Objection for the Investigation

- Civil Participation in Police Stage -

Myung, Do-Hyun · Park, Ho-Hyun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rs for the suppression are always should be faired without the corruption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results. Also, the investigation must provide to the people for human rights friendly and professional and quality and quantity of the investigation because the police isolate the offenders to maintain the welfare of the people and public order in society. This process is shown to the due process because people connect directly to reliability.

In this study, a improvement of objection for the investigation to establish the reliability in criminal investigation activities of investigation police officers. Police investigation's improvements are required in various forms that the civilian advisory board operations, independent of the police investigation activities, complaints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bout the process and handling, investigation improper replacement, providing the opportunity to state its reasons for unsatisfactory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to establish the fairness and the reliability of criminal investigation, First, the Objection Investigation Team and Hearing Inspection Unit avoid duplicate work and must quickly adjust to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petitioner. Second, the Investigation police

should be guaranteed independence from administration police to provide services the professional and prompt investigation. Third, the appeals for the investigator to be guaranteed by this system about the illegal and unjust conduct the investigation. Fourth, the limitation of exclusion, challenge, and refraining should be regulated in the case of job-related to investigators. Fifth, the applicant's reasons for its direct listening, and must be given the opportunity to be heard.